|  |  |  |
| --- | --- | --- |
| **수출입 화장품 검사검역 감독관리**  **방법**  국가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령 제143호  《수출입 화장품 검사검역 감독관리 방법》을 2011년 1월 13일에 국가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국 사무회의에서 심의통과하고 이에 공포하며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장 駱琳  2011년 8월 10일  **제1장 총 칙**  **제1조** 수출입 화장품의 안전과 위생상의 품질을 보장함으로써 소비자의 신체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상품 검사법》및 그 실시조례와《화장품 위생 감독조례》, 《식품 등 제품의 안전에 대한 감독관리를 보강할 데 대한 국무원의 특별규정》등 법률과 행정법규, 규정제도의 규정에 근거해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은《출입국 검사검역기구에서 검사 검역을 실시하는 상품목록》에 들어 있고 관련 국제조약이나 과련 법률, 행정법규에 검사검역기구에서 검사검역을 실시한다고 규정한 화장품(완성품과 반제품 포함)의 검사검역에 적용한다.  **제3조** 국가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이하 국가품질검사총국이라 함)에서 전국 수출입 화장품의 검사검역 감독활동을 주관한다.  국가품질검사총국이 각지에 설치한 출입국 검사검역기구(이하 검사검역기구라 함)에서 관할구역 내의 수출입 화장품에 대한 검사검역 감독활동을 책임진다.  **제4조** 수출입 화장품의 생산 경영자는 법률, 행정법규 및 과련 표준에 준해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함으로써 화장품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회와 공중 앞에 대한 책임지며 사회의 감독을 접수하고 사회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제2장 수입화장품의 검사거역**  **제5조** 검사검역기구에서는 우리나라 국가 기술규범의 강제성요구 및 우리나라가 수출국과 체결한 합의서, 의정서에 규정한 검사검역요구에 따라 화장품에 대한 검사검역을 실시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제정한 국가기술규범에 강제성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품질검사총국에서 지정한 외국의 관련표준에 따라 검사해야 한다.  **제6조** 수입화장품은 출입국 검사검역기구에서 검사검역을 실시한다. 무역의 편의와 수입검사 작업의 수요를 보아 국가품질검사총국에서 여타지점을 지정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검사검역기구에서는 수입화장품 수하인의 등록내용에 따라 관리한다. 수입화장품의 수하인은 수입화장품의 행방을 사실대로 등록하고 그 기록을 최저 2년간 보존해야 한다.  **제8조** 수입화장품의 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은 국가 품질검사총국의 관련규정에 따라 검사신고를 하는 동시에 수하인의 등록번호를 제공해야 한다.  그중 제 1회 수입화정품은 하기서류를 제고해야 한다.  (1) 국가의 관련규정에 부합하고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상황에서 인체건강에 위험이 없다는 성명서  (2) 제품의 처방  (3) 국가에서 위생허가제도나 등록 제도를 실시하는 화장품은 국가 관련 주관부서에서 인가한 수입화장품 위생허가서 또는 등록증빙  (4) 국가에서 위생허가제도나 등록 제도를 실시하지 않는 하장품은 하기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a. 관련 자격이 있는 기구에서 제시한, 안전에 대한 위험물질이 존재할 수 있다면 그에 대한 안전성 평가자료  b. 생산국가(지역)의 생산, 판매를 인가한 증명서류나 원산지 증명서  (5) 포장 판매하는 화장품 완제품인 경우에는 앞 네 호 이외에 중문레이블 샘플과 외국문자 레이블의 번역문  (6) 비 판매 포장화장품 완제품인 경우에는 제품의 명칭, 수량/중량, 사양, 산지, 생산 로트번호와 사용 제한일자(품질 보장기간), 포장을 한 목적지 명칭, 포장을 한 공장명칭 주소와 연락방법  (7) 국가품질검사총국에서 요구하는 기타 서류.  상기한 서류의 복사본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검사검역 합격증명서를 취득하기 전까지 수입 화장품은 검사검역기구가 지정했거나 허용한 장소에 두어야 하며 어떤 단위나 개인이든지 검사검역기구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의로 이전, 판매,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검사검역기구는 검사신고를 접수한 후 수입 화장품에 대한 검사검역을 진행하고 현지검사, 샘플링, 실험실검사 등을 통하여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제11조** 현장검사의 내용에는 화물과 증명서의 상부여부, 제품의 포장, 레이블 판면양식, 제품의 감각성상, 운수수단, 컨테이너나 적치장소의 위생상황을 포함한다.  **제12조** 수입화장품 완제품의 레이블 링은 우리나라 관련 법률, 행정법규 및 국가 기술규범의 강제성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검사검역기구에서는 화장품 레이블의 내용이 법률, 행정법규 요구에 부합하는 지를 심사 확인하고 품질과 관련한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검사해야 한다.  **제13조** 수입 화장품의 샘플링은 국가 관련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하며 샘플의 수량은 검사, 재검사, 검사대비 등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하기 상황에서는 더욱 엄격해야 한다.  (1) 처음 수입하는 경우  (2) 전에 품질의 안전문제가 존재하였던 경우  (3) 수립 양이 보다 많은 경우.  샘플링에 임하는 검사검역기구는 일련번호가 있고 검사검역 업무인감을 날인한《샘플링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며 샘플링 담당자와 화물 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해야 한다.  샘플은 국가 관련규정에 따라 관리해야 하며 합격한 화장품의 샘플은 샘플링 후 4개원 간 보존하고 특수용도 화장품의 샘플은 샘플링 후 1년간 보존하며 불합격한 화장품의 샘플은 품질보장기간 완료일까지 보존해야 한다. 사건조사와 관련한 샘플은 사건 종지까지 보존해야 한다.  **제14조** 실험실 검사가 필요한 경우 검사검역기구에서 검사종목과 검사요구를 학정해서 샘플을 해당자질이 있는 검사기구에 보내야 한다. 검사기구에서는 요구에 따라 검사하고 규정일시에 검사보고서를 제시해야 한다.  **제15조** 수입화장품이 검사검역에 합격한 경우 검사검역기구에서 화물의 명칭, 브랜드, 원산국가(지역), 규격, 수량/중량, 생산 로트번호/생산일자 등을 명기한《입국화물 검사검역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수입화장품은《입국화물 검사검역 증명서》를 취득해야 판매, 사용할 수 있다.  수입화장품이 검사검역에 불합격이고 안전, 건강, 환경과 관련되는 경우 샘플링 검사검역기구가 당사자에게 소각을 명하거나 반품처리 통지서를 제시하여 당사자가 반출수속을 하게 해야 한다. 여타종목에 불합격인 경우에는 검사검역기구의 감독 하에서 기술처리를 해서 재 검사검역에 합격한 후에야 판매, 사용할 수 있다.  **제16조** 면세화장품의 수하인이 소재지 직속검사검역기구에 신고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본 기업의 명칭, 주소, 법정대표자, 주관부서, 경영범위, 연락인, 연락방법, 제품명세서 등 관련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17조** 경외에서 들어오는 면세화장품은 수입검사를 실시하며 중문 레이블을 부착하지 않을 수 있고 레이블 부합여부 검사를 면제한다.《입국화물 검사검역 증명서》에는 출국 면세점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고 밝혀야 한다.  처음 수입하는 경외 면세화장품은 화물공급업체가 제시한, 제품품질의 안전성이 우리나라 관련규정에 부합한다는 성명서, 국외 관방이나 관련 기구에서 반포한, 자유로 판매할 수 있다는 증명서 또는 원산지 증명서, 관련 자질이 있는 기구에서 제시한 존재할 수 있는 안전성 위험물질에 대한 안전성 평가자료, 재품의 처방 등을 제공해야 한다.  국가 품질검사총국에서 대만 면세화장품에 대한 검사검역과 감독관리를 실시하며 구체방법은 별도로 제정한다.  **제3장 수출화장품의 검사검역**  **제18조** 수출화장품 생산기업에서는 그 수출화장품의 품질이 수입국가(지역)의 표준이나 계약서 요구에 부합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수입국가(지역)에 관련표준이 없고 계약서에도 요구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 품직검사총국에서 관련표준을 지정할 수 있다.  **제19조** 국가 품질검사총국에서 수출화장품 생산기업에 대한 등록관리를 실시한단 구체방법은 국가 품질감독총국에서 별도로 제정한다.  **제20조** 수출화장품은 생산지 검사검역기구에서 검사검역을 실시하고 통상세관(口岸) 검사검역기구에서 출입검사를 실시한다.  통상세관 검사검역기구에서는 검사 불합격정보를 생산지 검사검역기구에 통보하는 동시에 규정에 따라 불합격정보를 상급 검사검역기구에 보고해야 한다.  **제21조** 수출화장품 생산기업에서는 반드시 품질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운행해야 한다. 검사검역기구에서는 수출화장품 생산기업의 품질 관리시스템 및 그 운행상황을 일상적으로 감독하고 검사해야 한다.  **제22조** 수출화장품 생산기업에서는 원료조달, 인수, 사용에 대한 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원료 제공업체에 원료의 합격증명서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수출화장품 생산기업에서는 생산 기록서류를 보관해야 하며 화장품 생산과정의 안전 관리상황을 여실히 기록해야 한다.  수출화장품 생산기업에서는 검사기록 제도를 수립하고 관련 규정요구에 따라 화장품을 검사함으로써 제품의 품질을 확실하게 보장해야 한다.  상기한 기록은 진실해야 하며 2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제23조** 수출화장품의 송하인이나 그 대리인은 국가 품질검사총국의 관련 규정에 따라 검사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시에 처음 수출하는 화장품인 경우에는 하기 서류들을 제공해야 한다.  (1) 화장품업체의 영업허가증, 위생허가증, 생산업체 등록서류 및 법률이나 행정법규에서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한 기타 증명서류  (2) 자기 성명서. 성명서에는 화장품이 수입국가(지역)의 관련법규와 표준요구에 부합하고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상황에서 인체건강에 위험이 없다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3) 제품의 처방  (4) 포장하여 판매하는 완제품은 외국어 라벨양식과 그 번역문  (5) 특수용도에 판매하는 포장화장품 완제품은 위생허가증이나 관련자질이 있는 기구에서 제시한 안전성 위험물질 포함여부와 관련한 안전성 평가자료.  상기한 서류의 복사본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 검사검역기구는 검사신고를 접수한 후 수출화장품에 대한 현지검사, 샘플링, 실험실검사를 포함한 검사검역을 실시하고 증명을 제시해야 한다.  **제25조** 현장검사의 내용에는 화물과 증명서의 상부여부, 제품의 포장, 레이블 판면양식, 제품의 감각성상, 운수수단, 컨테이너나 적치장소의 위생상황을 포함한다.  **제26조** 수출화장품의 샘플링은 국가 관련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하며 샘플의 수량은 검사, 재검사, 검사대비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샘플링에 임하는 검사검역기구는 일련번호가 있고 검사검역 업무인감을 날인한《샘플링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며 샘플링 담당자와 화물 송하인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해야 한다.  샘플은 국가 관련규정에 따라 관리해야 하며 합격한 화장품의 샘플은 샘플링 후 4개원 간 보존하고 특수용도 화장품의 샘플은 샘플링 후 1년간 보존하며 불합격한 화장품의 샘플은 품질보장기간 완료일까지 보존해야 한다. 사건조사와 관련한 샘플은 사건 종지까지 보존해야 한다.  **제27조** 실험실 검사가 필요한 경우 검사검역기구에서 검사종목과 검사요구를 확정한 다음 샘플을 해당자질이 있는 검사기구에 보내야 한다. 검사기구에서는 요구에 따라 검사하고 규정일시에 검사보고서를 제시해야 한다.  **제28조** 수출화장품이 검사검역에 합격한 경우 샘플링 검사검역기구에서 규정에 따라 통관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수입국가(지역)에서 검사검역 증명서에 대해 요구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요구에 따라 관련 검사검역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수출화장품이 검사검역에 불합격인 경우 검사검역기구의 감독 하에 기술처리를 해서 재 검사검역에 합격해야 수출할 수 있다. 기술처리를 할 수 없거나 기술처리를 해서도 불합격인 경우에는 수출을 불허한다.  **제29조** 위탁가공으로 완전 수출하는 화장품으로서 원료수입 시에 수입국가(지역)의 법규나 표준에 부합한다는 증명서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국가표준에 따른 검사를 면제하고 가공후의 제품은 수입국가(지역)의 표준에 따라 검사검역을 실시한다.  **제4장 비 무역 화장품의 검사검역**  **제30조** 화장품 위생허가 신고나 등록을 위한 샘플, 기업개발이나 홍보용으로서 시용하지 않는 샘플은 수입 통관신고 시에 화물 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이 샘플의 사용 및 처리상황 설명서 및 비매품 약속을 제공하는 경우 출입국 검사검역기구에서 심사하여 등록하고 사용범위에 합리한 수량은 검사를 면제한다. 화물 수하인은 화장품의 행처를 여실히 기록해야 하며 기록은 최소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제31조** 비 시용, 비 판매 전시품 수입은 통관신고 시에 전시회 주최(주관)단위에서 제시한 전시증명서를 제시하면 검사를 면제한다. 전시회 후에는 검사검역기구의 감독 하에서 반출하거나 소각해야 한다.  **제32조** 우편으로 입국하여 개인이 사용하는 화장품(선물 포함)은 출입국 세관에서 필요에 따라 검역해야 한다.  **제33조** 외국 또는 국제 주중 관방기구에서 자가용 화장품을 수입하는 경우 입국세관 소재지 검사검역기구에서 검사한다. 외국 또는 국제 주중 관방기구 자가용 물품 입국 검사검역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면제한다.  **제5장 감독 관리**  **제34조** 검사 신고인이 검사결과에 이의를 표시하고 재검을 신청하는 경우 국가 관련규정에 따라 재검해야 한다.  **제35조** 검사검역기구에서는 수출입 화장품 생산 경영업체에 대한 유형별 관리 제도를 실시한다.  **제36조** 검사검역기구에서는 수입화장품의 수하인, 수출화장품 생산업체와 화물 송하인에 대하여 신용관리를 실시하고 불량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검역 및 감독관리를 보강해야 한다.  **제37조** 국가 품질검사총국에서는 수출입 화장품의 안전에 대한 위험감시 제도를 실시하고 연도 수출입 화장품 안전에 대한 감시통제계획을 제정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검사검역기구에서는 국가 품질검사총국의 수출입 화장품안전에 대한 위험감시계획에 따라 자기 관할지역 수출입 화장품에 대한 감시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상급에 보고해야 한다.  검사검역기구에서는 수출입 화장품 위험감시결과에 따라 위험을 분류하고 그 기초에서 수출입 화장품에 대한 검사검역과 관리조치를 조절해야 한다.  **제38조** 국가 품질검사총국에서는 수출입 화장품 위험알람 및 쾌속반응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수출입 화장품의 품질안전문제가 발생했거나 국내외에 화장품 품질안전문제가 발생하여 수출입 화장품의 안전에 영향이 미칠 수 있는 경우에 국가 품질검사총국과 검사검역기구에서는 즉시 위험알람 메커니즘을 가동하고 쾌속반응조치를 취하야 한다.  **제39조** 국가 품질검사총국에서는 위험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하기와 같은 쾌속반응조치를 결정하여 공포하고 실시할 수 있다.  (1) 엄밀한 감시 통제, 엄한 검사, 회수명령 등을 포함한 수출입 조건부 제한  (2) 수출입 금지, 현지소각이나 반출처리  (3) 수출입 화장품 안전 긴급조치.  쾌속반응조치는 검사검역기구에서 책임지고 실시한다.  **제40조** 불확정적인 위험에 대하여 국가 품질검사총국에서는 국제상의 통상적 방법을 참조하여 위험평가 전에 직접 임시적 쾌속반응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관련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위험평가를 진행하여 위험의 유형과 정도를 확정한다.  **제41조** 수입화장품에 안전문제가 존재하여 이미 인체안전과 생명안전의 손상을 조성하였거나 그 가능성이 있는 경우 화물 수하인은 주동적으로 화장품을 회수하는 동시에 소재지 검사검역기구에 보고해야 한다. 수하인은 관련정보를 사회에 공포하고 판매업체에 통지하여 판매를 중지하게 하며 소비자에게 알려 사용을 중지하게 하고 회수기록을 잘 해야 한다. 화물 수하인이 주동으로 회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검역기구에서 명하여 회수하게 할 수 있다. 필요시에는 국가 품질검사총국에서 명하여 회수하게 한다.  수출화장품에 안전문제가 존재하여 이미 인체안전과 생명안전의 손상을 조성하였거나 그 가능성이 있는 경우 수출화장품 생산업체에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소재지 검사검역기구에 보고해야 한다.  검사검역기구에서는 관할구역 내의 회수상황을 국가 품질검사총국에 보고해야 한다.  **제42조** 이 방법에서 반드시 검사검역기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수출입 화장품을 제외한 수출입 화장품은 검사검역기구에서 선택검사를 실시한다.  **제6장 법률 책임**  **제43조** 검사검역기구의 검사를 받아 합격하지 않은 수입화장품을 검사검역기구의 인가를 받지 않고 자의로 지정장소 또는 인가한 감독관리장소에서 옮겨가고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 검사검역기구에서 불법소득의 3배 이하, 최고 3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고 불법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44조** 수입한 비 시용 또는 비 판매 화장품 전시품을 시용하거나 판매하여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 검사검역기구에서 불법소득의 3배 이하, 최고 3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고 불법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 한다.  **제45조** 반출, 소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검사검역기구에서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46조** 검사검역기구의 임직원이 숙지한 상업비밀을 누설한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 불법소득을 몰수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47조** 수출입 화장품 생산 경영업체와 검사검역 담당자에게 기타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7장 부 칙**  **제48조** 이 방법에서 사용한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1) 화장품이라 함은 인체표면 임의의 부위(피부, 모발, 손톱, 발톱, 입술)나 구강점막, 치아에 부치거나 바르거나 분사하여 정결, 악취제거 피부호리, 미용의 목적을 달성하는 제품을 말한다.  (2) 화장품의 반제품이라 함은 최종공정으로 판매를 위해 병에 갈라 넣지 않고 나누어 포장하지 않았을 뿐 기여의 공정을 완료한 화장품을 말한다.  (3) 화장품의 완제품에는 판매용 포장화장품, 비 판매 포장화장품을 포함한다.  (4) 판매 포장 화장품이라 함은 판매를 주요목적으로 하고 판매용 포장재와 내용물이 함께 소비자에게 주어지는 화장품을 말한다.  (5) 비 판매 포장 화장품이라 함은 내용물과 접촉하는 최종공서는 완료하였으나 판매포장을 하지 않은 화장품의 완제품을 말한다.  **제49조** 이 방법은 국가 품질검사총국에서 해석한다.  **제50조** 이 방법은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원 국가 출입국 검사검역국에서 제정하여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수출입 화장품 감독 검사 관리방법》(국령 제21호)은 동일자로 폐지한다. |  | **进出口化妆品检验检疫监督管理办法**  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令第143号  《进出口化妆品检验检疫监督管理办法》已经2011年1月13日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局务会议审议通过，现予公布，自2012年2月1日起施行。  局长 骆琳  二〇一一年八月十日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保证进出口化妆品的安全卫生质量，保护消费者身体健康，根据《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及其实施条例、《化妆品卫生监督条例》和《国务院关于加强食品等产品安全监督管理的特别规定》等法律、行政法规的规定，制定本办法。  **第二条** 本办法适用于列入《出入境检验检疫机构实施检验检疫的商品目录》及有关国际条约、相关法律、行政法规规定由检验检疫机构检验检疫的化妆品（包括成品和半成品）的检验检疫及监督管理。  **第三条** 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以下简称国家质检总局）主管全国进出口化妆品检验检疫监督管理工作。  国家质检总局设在各地的出入境检验检疫机构（以下简称检验检疫机构）负责所辖区域进出口化妆品检验检疫监督管理工作。  第四条 进出口化妆品生产经营者应当依照法律、行政法规和相关标准从事生产经营活动，保证化妆品安全，对社会和公众负责，接受社会监督，承担社会责任。  **第二章 进口化妆品检验检疫**  **第五条**　检验检疫机构根据我国国家技术规范的强制性要求以及我国与出口国家（地区）签订的协议、议定书规  定的检验检疫要求对进口化妆品实施检验检疫。  我国尚未制定国家技术规范强制性要求的，可以参照国家质检总局指定的国外有关标准进行检验。  **第六条** 进口化妆品由口岸检验检疫机构实施检验检疫。国家质检总局根据便利贸易和进口检验工作的需要，可以指定在其他地点检验。  **第七条** 检验检疫机构对进口化妆品的收货人实施备案管理。进口化妆品的收货人应当如实记录进口化妆品流向，记录保存期限不得少于2年。  **第八条** 进口化妆品的收货人或者其代理人应当按照国家质检总局相关规定报检，同时提供收货人备案号。  其中首次进口的化妆品应当提供以下文件：  （一）符合国家相关规定要求，正常使用不会对人体健康产生危害的声明；  （二）产品配方；  （三）国家实施卫生许可或者备案的化妆品，应当提交国家相关主管部门批准的进口化妆品卫生许可批件或者备案凭证；  （四）国家没有实施卫生许可或者备案的化妆品，应当提供下列材料：  1. 具有相关资质的机构出具的可能存在安全性风险物质的有关安全性评估资料；  2. 在生产国家（地区）允许生产、销售的证明文件或者原产地证明；  （五）销售包装化妆品成品除前四项外，还应当提交中文标签样张和外文标签及翻译件；  （六）非销售包装的化妆品成品还应当提供包括产品的名称、数/重量、规格、产地、生产批号和限期使用日期（生产日期和保质期）、加施包装的目的地名称、加施包装的工厂名称、地址、联系方式；  （七）国家质检总局要求的其他文件。  上述文件提供复印件的，应当同时交验正本。  **第九条**　进口化妆品在取得检验检疫合格证明之前，应当存放在检验检疫机构指定或者认可的场所，未经检验检疫机构许可，任何单位和个人不得擅自调离、销售、使用。  **第十条** 检验检疫机构受理报检后，对进口化妆品进行检验检疫，包括现场查验、抽样留样、实验室检验、出证等。  **第十一条** 现场查验内容包括货证相符情况、产品包装、标签版面格式、产品感官性状、运输工具、集装箱或者存放场所的卫生状况。  **第十二条** 进口化妆品成品的标签标注应当符合我国相关的法律、行政法规及国家技术规范的强制性要求。检验检疫机构对化妆品标签内容是否符合法律、行政法规规定要求进行审核，对与质量有关的内容的真实性和准确性进行检验。  **第十三条** 进口化妆品的抽样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执行，样品数量应当满足检验、复验、备查等使用需要。以下情况，应当加严抽样：  （一）首次进口的；  （二）曾经出现质量安全问题的；  （三）进口数量较大的。  抽样时，检验检疫机构应当出具印有序列号、加盖检验检疫业务印章的《抽/采样凭证》，抽样人与收货人或者其代理人应当双方签字。  样品应当按照国家相关规定进行管理，合格样品保存至抽样后4个月，特殊用途化妆品合格样品保存至证书签发后一年，不合格样品应当保存至保质期结束。涉及案件调查的样品，应当保存至案件结束。  **第十四条** 需要进行实验室检验的，检验检疫机构应当确定检验项目和检验要求，并将样品送具有相关资质的检验机构。检验机构应当按照要求实施检验，并在规定时间内出具检验报告。  **第十五条** 进口化妆品经检验检疫合格的，检验检疫机构出具《入境货物检验检疫证明》，并列明货物的名称、品牌、原产国家（地区）、规格、数/重量、生产批号/生产日期等。进口化妆品取得《入境货物检验检疫证明》后，方可销售、使用。  进口化妆品经检验检疫不合格，涉及安全、健康、环境保护项目的，由检验检疫机构责令当事人销毁，或者出具退货处理通知单，由当事人办理退运手续。其他项目不合格的，可以在检验检疫机构的监督下进行技术处理，经重新检验检疫合格后，方可销售、使用。  **第十六条** 免税化妆品的收货人在向所在地直属检验检疫机构申请备案时，应当提供本企业名称、地址、法定代表人、主管部门、经营范围、联系人、联系方式、产品清单等相关信息。  **第十七条** 离境免税化妆品应当实施进口检验，可免于加贴中文标签，免于标签的符合性检验。在《入境货物检验检疫证明》上注明该批产品仅用于离境免税店销售。  首次进口的离境免税化妆品，应当提供供货人出具的产品质量安全符合我国相关规定的声明、国外官方或者有关机构颁发的自由销售证明或者原产地证明、具有相关资质的机构出具的可能存在安全性风险物质的有关安全性评估资料、产品配方等。  国家质检总局对离岛免税化妆品实施检验检疫监督管理，具体办法另行制定。  **第三章 出口化妆品检验检疫**  **第十八条**　出口化妆品生产企业应当保证其出口化妆品符合进口国家（地区）标准或者合同要求。进口国家（地区）无相关标准且合同未有要求的，可以由国家质检总局指定相关标准。  **第十九条** 国家质检总局对出口化妆品生产企业实施备案管理。具体办法由国家质检总局另行制定。  **第二十条** 出口化妆品由产地检验检疫机构实施检验检疫，口岸检验检疫机构实施口岸查验。  口岸检验检疫机构应当将查验不合格信息通报产地检验检疫机构，并按规定将不合格信息上报上级检验检疫机构。  **第二十一条**　出口化妆品生产企业应当建立质量管理体系并持续有效运行。检验检疫机构对出口化妆品生产企业质量管理体系及运行情况进行日常监督检查。  **第二十二条** 出口化妆品生产企业应当建立原料采购、验收、使用管理制度，要求供应商提供原料的合格证明。  出口化妆品生产企业应当建立生产记录档案，如实记录化妆品生产过程的安全管理情况。  出口化妆品生产企业应当建立检验记录制度，依照相关规定要求对其出口化妆品进行检验，确保产品合格。  上述记录应当真实，保存期不得少于2年。  **第二十三条**　出口化妆品的发货人或者其代理人应当按照国家质检总局相关规定报检。其中首次出口的化妆品应当提供以下文件：  （一）出口化妆品企业营业执照、卫生许可证、生产许可证、生产企业备案材料及法律、行政法规要求的其他证明；  （二）自我声明。声明化妆品符合进口国家（地区）相关法规和标准的要求，正常使用不会对人体健康产生危害等内容；  （三）产品配方；  （四）销售包装化妆品成品应当提交外文标签样张和中文翻译件；  （五）特殊用途销售包装化妆品成品应当提供相应的卫生许可批件或者具有相关资质的机构出具的是否存在安全性风险物质的有关安全性评估资料。  上述文件提供复印件的，应当同时交验正本。  **第二十四条** 检验检疫机构受理报检后，对出口化妆品进行检验检疫，包括现场查验、抽样留样、实验室检验、出证等。  **第二十五条** 现场查验内容包括货证相符情况、产品感官性状、产品包装、标签版面格式、运输工具、集装箱或者存放场所的卫生状况。  **第二十六条** 出口化妆品的抽样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执行，样品数量应当满足检验、复验、备查等使用需要。  抽样时，检验检疫机构应当出具印有序列号、加盖检验检疫业务印章的《抽/采样凭证》，抽样人与发货人或者其代理人应当双方签字。  样品应当按照国家相关规定进行管理，合格样品保存至抽样后4个月，特殊用途化妆品合格样品保存至证书签发后一年，不合格样品应当保存至保质期结束。涉及案件调查的样品，应当保存至案件结束。  **第二十七条** 需要进行实验室检验的，检验检疫机构应当确定检验项目和检验要求，并将样品送具有相关资质的检验机构。检验机构应当按照要求实施检验，并在规定时间内出具检验报告。  **第二十八条**　出口化妆品经检验检疫合格的，由检验检疫机构按照规定出具通关证明。进口国家（地区）对检验检疫证书有要求的，应当按照要求同时出具有关检验检疫证书。  出口化妆品经检验检疫不合格的，可以在检验检疫机构的监督下进行技术处理，经重新检验检疫合格的，方准出口。不能进行技术处理或者技术处理后重新检验仍不合格的，不准出口。  **第二十九条** 来料加工全部复出口的化妆品，来料进口时，能够提供符合拟复出口国家（地区）法规或者标准的证明性文件的，可免于按照我国标准进行检验；加工后的产品，按照进口国家（地区）的标准进行检验检疫。  **第四章 非贸易性化妆品检验检疫**  **第三十条** 化妆品卫生许可或者备案用样品、企业研发和宣传用的非试用样品，进口报检时应当由收货人或者其代理人提供样品的使用和处置情况说明及非销售使用承诺书，入境口岸检验检疫机构进行审核备案，数量在合理使用范围的，可免于检验。收货人应当如实记录化妆品流向，记录保存期限不得少于2年。  **第三十一条** 进口非试用或者非销售用的展品，报检时应当提供展会主办（主管）单位出具的参展证明，可以免予检验。展览结束后，在检验检疫机构监督下作退回或者销毁处理。  **第三十二条** 携带、邮寄进境的个人自用化妆品（包括礼品），需要在入境口岸实施检疫的，应当实施检疫。  **第三十三条** 外国及国际组织驻华官方机构进口自用化妆品，进境口岸所在地检验检疫机构实施查验。符合外国及国际组织驻华官方机构自用物品进境检验检疫相关规定的，免于检验。  **第五章 监督管理**  **第三十四条** 报检人对检验结果有异议而申请复验的，按照国家有关规定进行复验。  **第三十五条** 检验检疫机构对进出口化妆品的生产经营者实施分类管理制度。  **第三十六条**　检验检疫机构对进口化妆品的收货人、出口化妆品的生产企业和发货人实施诚信管理。对有不良记录的，应当加强检验检疫和监督管理。  **第三十七条**　国家质检总局对进出口化妆品安全实施风险监测制度，组织制定和实施年度进出口化妆品安全风险监控计划。检验检疫机构根据国家质检总局进出口化妆品安全风险监测计划，组织对本辖区进出口化妆品实施监测并上报结果。  检验检疫机构应当根据进出口化妆品风险监测结果，在风险分类的基础上调整对进出口化妆品的检验检疫和监管措施。  **第三十八条** 国家质检总局对进出口化妆品建立风险预警与快速反应机制。进出口化妆品发生质量安全问题，或者国内外发生化妆品质量安全问题可能影响到进出口化妆品安全时，国家质检总局和检验检疫机构应当及时启动风险预警机制，采取快速反应措施。  **第三十九条**　国家质检总局可以根据风险类型和程度，决定并公布采取以下快速反应措施：  （一）有条件地限制进出口，包括严密监控、加严检验、责令召回等；  （二）禁止进出口，就地销毁或者作退运处理；  （三）启动进出口化妆品安全应急预案。  检验检疫机构负责快速反应措施的实施工作。  **第四十条**　对不确定的风险，国家质检总局可以参照国际通行做法在未经风险评估的情况下直接采取临时性或者应急性的快速反应措施。同时，及时收集和补充有关信息和资料，进行风险评估，确定风险的类型和程度。  **第四十一条** 进口化妆品存在安全问题，可能或者已经对人体健康和生命安全造成损害的，收货人应当主动召回并立即向所在地检验检疫机构报告。收货人应当向社会公布有关信息，通知销售者停止销售，告知消费者停止使用，做好召回记录。收货人不主动召回的，检验检疫机构可以责令召回。必要时，由国家质检总局责令其召回。  出口化妆品存在安全问题，可能或者已经对人体健康和生命安全造成损害的，出口化妆品生产企业应当采取有效措施并立即向所在地检验检疫机构报告。  检验检疫机构应当将辖区内召回情况及时向国家质检总局报告。  **第四十二条** 检验检疫机构对本办法规定必须经检验检疫机构检验的进出口化妆品以外的进出口化妆品，根据国家规定实施抽查检验。  **第六章　法律责任**  **第四十三条** 未经检验检疫机构许可，擅自将尚未经检验检疫机构检验合格的进口化妆品调离指定或者认可监管场所，有违法所得的，由检验检疫机构处违法所得3倍以下罚款，最高不超过3万元；没有违法所得的，处1万元以下罚款。  **第四十四条** 将进口非试用或者非销售用的化妆品展品用于试用或者销售，有违法所得的，由检验检疫机构处违法所得3倍以下罚款，最高不超过3万元；没有违法所得的，处1万元以下罚款。  **第四十五条** 不履行退运、销毁义务的，由检验检疫机构处以1万元以下罚款。  **第四十六条**　检验检疫机构工作人员泄露所知悉的商业秘密的，依法给予行政处分，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四十七条** 进出口化妆品生产经营者、检验检疫工作人员有其他违法行为的，按照相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处理。  **第七章　附 则**  **第四十八条**　本办法下列用语的含义是：  （一）化妆品是指以涂、擦、散布于人体表面任何部位（表皮、毛发、指趾甲、口唇等）或者口腔粘膜、牙齿，以达到清洁、消除不良气味、护肤、美容和修饰目的的产品；  （二）化妆品半成品是指除最后一道“灌装”或者“分装”工序外，已完成其他全部生产加工工序的化妆品；  （三）化妆品成品包括销售包装化妆品成品和非销售包装化妆品成品；  （四）销售包装化妆品成品是指以销售为主要目的，已有销售包装，与内装物一起到达消费者手中的化妆品成品；  （五）非销售包装化妆品成品是指最后一道接触内容物的工序已经完成，但尚无销售包装的化妆品成品。  **第四十九条** 本办法由国家质检总局负责解释。  **第五十条** 本办法自2012年2月1日起施行。原国家出入境检验检疫局2000年4月1日施行的《进出口化妆品监督检验管理办法》（局令21号）同时废止。 |